

심의결과 위안대로그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지
제62호	제31차	1987.11.19	총재 박성상

의 인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외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제59조

제외취지 근로자주택마련저축제도의 신설에 따라 동예금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을 정함에 있어 동예금이 장기성예금으로서 예금자의 빈번한 인출
요구의 가능성이 작고 기존의 근로자저축형성저축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사항 재의관계 법규조항의 발췌

한국은행법 제57조

1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생 략

한국은행법 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2. 생 략

<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안) >

현행	개정 (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	제2조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u>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u> 예금지급준비 최저율을 2%로 한다.	3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u>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는</u> 예금지급준비 최저율을 2%로 한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 (예금의 분류)	제3조 (예금의 분류)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근로자재산형성저축예금은</u> 저축성예금으로 분류한다.	2 <u>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u> 저축성예금으로 분류한다.
제4조~제6조 (생략)	제4조~제6조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규정은 1987.12.1부터 시행한다.